

◎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144호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7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전국 생태·자연도(生態·自然圖) 수시고시

- 1. 대상지역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일대 등 6개 지역
- 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- 3. 생태·자연도 수시고시 내용

대상지역	도 업	생태·자연도 등급		비 고
		당초고시	수정·보완	
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일대	동래 359131	1 등급	2 등급	식생
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110-4 일대	김해 358162	1 등급	2 등급	식생
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64 일대	고현 348032	1 등급	1, 2, 3 등급	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
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 산109 일대	백일 347062	1 등급	2, 3 등급	식생
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8 및 산38-2 일대	동두천 377011	1 등급	1, 2, 3 등급	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
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97-4 일원	서정 377133	2 등급	2, 3 등급	식생

- 4. 생태·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(에코뱅크, <https://www.nie-ecobank.kr>)에 게재  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등(준비서 포함)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.